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實用新案 拒絕 不服

〈大法院 第3部 判決〉(1989. 1. 17)

事件番號：87후 8

裁判長：윤 영 철

關與法官：이 재 성 · 박 우 동

1. 出願人(上告人)：안 희 철
2. 相對方(被上告人)：특허청장
3. 原審決：特許廳 抗告審判所 1986. 12. 18字 1986年 抗告審判(絶) 第773號
4. 主 文：原審決을 파기하고 사건을 特許廳 抗告審判所에 환송한다.
5. 理 由：上告理由를 본다.

原審決 이유에 의하면 特許廳 抗告審判所는 이 사건 實用新案 出願人 중 안광균 및 안호균은 미성년자 였으나 原審에 抗告審判請求를 하던날인 1986. 11. 12 현재로는 그 중 안광균은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안희철 혼자 이름으로 한 이 건 抗告審判請求는 부적법하고 보정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이유로 抗告審判請求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實用新案法 第29條에 의하여 준용되는 特許法 第29條는 2인 이상이 實用新案 出願절차를 받았을 때에는 同條 第1項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은 抗告審判

請求는 위 同條 第1項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共同出願人의 1인인 안희철은 共同出願人 3인을 대표하여 적법하게 抗告審判請求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特許廳 抗告審判所로서는 본안의 審理에 들어가서 抗告審判 請求의 이유 유무를 가려 審判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건 抗告審判請求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건 上告는 이유 있으므로 原審決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審理判斷하게 하기 위하여 特許廳 抗告審判所에 환송하기로 關與法官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判決한다. (※)

◎ 알 린 ◎

零細發明人을 돕습니다

大韓辨理士會에서는 국민자가 發明·考案을 하여 이를 出願하고자 할 때 당회소속 辨理士가 무료수로 受任하여 모든 節次를 수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자 發明人 여러분께서는 大韓辨理士會를 많이 利用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① 邑·面·洞長이 發行하는 영세생활보호대상자 증명 2통

② 發明 考案의 要旨說明書 2통(도면 포함)

※ 자세한 사항은 大韓辨理士會(552-0882~5)로 問議바랍니다